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54
----------	--------

제출년월일 : 2024. 11.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발행 대상 추가, 부설주차장 설치 조건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마을버스 운송 안정화 기여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영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발행 대상 추가 및 기간 연장(안 제12조제3항 및 [별표1] 비고 6.)
- 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에서 '인근'의 범위 확대(안 제19조)
- 다. 현행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 [별표1]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4. 10. 10. ~ 10. 30.(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5)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의결(2024. 11. 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일반인의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1과 같이 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월 정기권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개인택시·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을 “개인택시, 마을버스,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정기권요금”을 “정기권 요금”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0미터”를 “300미터”로, “300미터”를 “600미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 시 5분당	월 정기권		1회주차 시 5분당	월 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50,000	60,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100,000	40,000	200	100,000	40,000
4급지	100	50,000	20,000	150	환승목적주차 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 5급지 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 시 월 정기권 요금

-노상주차장: 월 4만원

-노외주차장: 월 5만원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홍익대학교·서강대학교 주변 지역 : 신촌로·대흥로·강변북로·양화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2) 용산·마포지역 : 강변북로·마포대로·충정로·통일로·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나. 2급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 마을버스,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

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개정 2020.2.27.>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탑승하여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신설 2020.2.27.>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신설 2021.12.30.>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

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1. 2급지부터 5급지까지 지역의 공영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2.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1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
14. <삭제, 2020. 7. 9.>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주차 당일의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주차 당일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 당일에 한정하여 총 주차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개정 2018.12.27., 2023. 3. 9.>
1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3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

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1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23.7.13.>

17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신설 2021.12.30.>

1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19.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0.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한다) 이용자 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단, 학교복합화시설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의 차량: 수강 시마다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3시간 이내 면제 <개정 2022.12.29.>

나.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 정기권 50% 할인(단, 중복할인 불가)

21. 공무수행차량,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행사 참석자의 차량은 행사 주관기관에서 서면으로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22. 삭제



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신설 2019.3.28.>
25.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3시간 범위에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4.24.>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u>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u></p> <p>② <u>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u></p> <p>1. 삭 제</p> <p>2. (생 략)</p> <p>③ <u>공영노외주차장에서 <u>개인택시·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u>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장의 월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u></p>	<p>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 ----- ----- <u>&lt;단서 삭제&gt;</u></p> <p>② <u>구청장은 일반인의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1과 같이 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월 정기권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③ ----- <u>개인택시, 마을버스,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u>----- ----- -----</p>

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5급지 주차장에서 주·야간을 모  
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  
미터 이내로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제1  
항관련)

(생략)

- 비 고 -

1.~5. (생략)

6. 구청장은 개인택시·개별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  
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  
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의 정기  
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  
-----  
----- 정기권 요금-----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  
-----  
-----  
-----  
-----  
300미터 ----- 600  
미터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제1  
항관련)

(현행과 같음)

- 비 고 -

1.~5. (현행과 같음)

6. ----- 개인택시, 마을버스,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송사  
업용 자동차 -----

---2년---

7. -----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 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개정 2020.2.27.>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  
-----  
-----  
-----  
-----  
-----  
-----  
-----  
-----

나. -----

-----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

다. -----

-----  
-----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  
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  
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  
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  
지한 사람

라.~바. (생략)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  
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  
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  
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  
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  
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

9.~15. (생략)

1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

-----  
-----

국가보훈부 장관 -----

-----

라.~바. (현행과 같음)

8. -----  
-----제2조

에 따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환경친화적 자동차 -----

---

9.~15. (현행과 같음)

16. -----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  
· 군 · 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3  
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17. (생략)

1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  
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  
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  
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  
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  
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  
제하고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  
한다.

19.~21. (생략)

22. 서울특별시장의 지정한 승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

-----  
-----  
-----  
-----  
-----  
-----  
-----  
-----  
-----.

17. (현행과 같음)

1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  
-----  
-----  
-----  
-----  
-----  
-----  
-----.

19.~21. (현행과 같음)

22. <삭제>

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 안정현 (☎ 3153-9664)